

#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이영실 의원 외 27명
- 의안번호 : 제1703호
- 발의일자 : 2024년 4월 3일
- 회부일자 : 2024년 4월 8일

## 2. 제 안 이 유

- 시장은 도시공원의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책무가 있는바, 이에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시설의 정비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 3. 주 요 내 용

- 가.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제2항)

## 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미첨부사유서)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로 위험시설의 정비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현행 조례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<sup>1)</sup>과 제5항<sup>2)</sup>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이 중복되고 있어 이를 구분하고,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2항(이동)으로 구체화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세부적으로 안 제3조제2항은 “어린이놀이시설 내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”하도록 구체화함으로써 단순 시설물 유지관리보다 직접적인 안전 환경조성을 구축하도록 하였음.

이에 따라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공원 전반에 걸쳐 안전한 환경에 대한 기준 정립과 노후 위험시설 정비 등 환경·조경계획이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 제31조제1항 및 별표 5 공원·녹지의 사무구분에 따라 ‘어린이공원’은 구청장 소관이므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임.

---

1) 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, 안전한 가운데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2) 제3조(책무) ⑤ 시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(이하 "놀이시설"이라 한다)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